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

제출년월일 : 1998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충청북도괴산교육청과 충청북도음성교육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학생야영장 2개소중 시설이 노후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실적이 부진하며, 운영면에서도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야영장을 폐지하여 교육청당 1개소의 야영장만을 운영하게 함으로써,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야영 수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"괴산학생야영장" 과 "음성학생야영장"을 폐지 (안 별표1)

○ "음성학생야영장조촌분원"을 "음성학생야영장"으로 함 (안 별표1)

□ 조 례 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 :

○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○ 야영장 현황 및 폐지후 활용방안 : 붙임

○ 야영장 위치도 : 붙임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중 괴산학생야영장란 및 음성학생야영장란을 삭제하고 명칭란중 "음성학생야영장조촌분원"을 "음성학생야영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